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명령 도입〉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0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명령 도입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1.
3. 회 부 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III. 검토의견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명령 도입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거주제한 명령을 도입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가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제한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조의3(거주제한명령)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한 거주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명령의 기간·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주제한명령의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u>준수사항</u>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9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② ----- ----- ----- -----<u>준수사항,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명령</u>-----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피부착자가 제9조의3제1항의 거주제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도 제3항의 형과 같다.</u>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에게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주거지역의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¹⁾

1)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에 대하여 법원이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²⁾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아동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의 거주제한명령은 특정 아동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내의 거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제한’ 또는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³⁾과 그 제한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대상자의 거주·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2)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3)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활동 가능 지역을 공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규율범위와 효과가 일부 중첩될 수 있음.

○ 현행법은 법원이 부작명령을 선고하면서 하나 이상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거지역의 제한’과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함.

○ 현행법은 준수사항 제도를 통하여 이미 상당한 공간적 제한 수단을 갖고 있으므로, 아동시설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별도의 거주제한명령을 도입해야 할 추가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거주제한명령의 기간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거주제한명령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과의 거리 및 거주제한 기간은 기본권 제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⁴⁾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현행법 제9조의2는 부작기간의 범위에서(단, 제4호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작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의 원칙을 내포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27.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그 기간을 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한편,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일정한 횟수 이상 저지른 사람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정의하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의 주거지를 특정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 제정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⁶⁾

□ 셋째, 2023년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를 학교 등 아동밀집 구역 500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학교 등 인구밀집구역 500미터 이내로 거주를 제한할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는 성폭력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없게 되므로 대상자들이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⁷⁾가 제시되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5

5)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6)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39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75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010호)

7) 윤정숙 등,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pp.50-52